

제정 2006. 05. 01.

개정 2018. 01. 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물리의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회장이 있는 곳에 사무소를 둔다.

제2조(목적과 범위) 본회는 물리학의 연구·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학의 범위는 광선, 전기, 물, 열, 냉·자극, 힘(force), 모멘트(moment), 토크(torque), 벡터(vector), 평형, 부력, 중력, 관성, 작용반작용의 법칙 등의 물리적 원리를 이용하고, 운동 치료 그리고 맨손치료로서 관절 가동술, 신경조직 가동술, 내장기관 가동술, 근육 및 연부조직 가동술, 결합조직 마사지, 의료 마사지, 신경근 촉진과 강화 기술, 근막이완술, 자세교정, 경락자극, 기능훈련, 두뇌 천골 가동술, 노인웰빙, 요가, 신체기능 보조장비 개발 및 착용 등이 포함된다.

제3조(조직) 본회는 각 시도에 시도 지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물리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사업
3. 물리학에 관한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국내외 관련 단체와 학술 교류.
5. 물리치료사 연수교육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및 권리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중신회원포함), 기타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중신회원포함)은 본회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물리치료사로서 가입비, 연회비납부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으로서는 회비의 10배를 일시에 납부한 사람은

종신회원이 된다.

2. 기타회원: 타학과 전공자
3. 학생회원: 물리치료 및 관련전공 학생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본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2. 본 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3. 본 회 결의 사항의 이행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종신회원포함)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기타회원은 선거권과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3. 학생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9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0조(총회 구성) 총회는 회원총회로 하며, 참석 인원으로 성립한다.

제11조(총회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회장은 총회 개최일 최소 7일 이전에 회원에게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및 보고) 총회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재심 의결 한다.

제13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3.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4. 회비
5. 임원선출
6. 기타 중요 사항

제5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편집위원장 포함) 5명
3. 이사장 1명
4. 이 사 30명 내외
5. 감 사 2명
6. 간 사 2명

제15조(임원선거)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장,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의장이 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 추천권을 가진다.

5. 간사는 본회의 회무를 관리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정상황.
2. 학회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이사장)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의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4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사회 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 참석 인원으로 성립한다.

제7장 분과 연구회

제24조 본회에는 전공 분야에 따라 분과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본회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총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 수익금

제9장 편집위원회와 게재논문심사

제26조(편집위원)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심사) 심사는 심사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